

苦小牧港 (도마고마이 항) 에 입항하는 선장 각위 (各位)

苦小牧海上交通安全協議会
(도마고마이 해상교통안전협의회)

苦小牧海上保安署
(도마고마이 해상보안서)

苦小牧港管理組合
(도마고마이항 관리조합)

도마고마이항에 있어서, 항내 (港内) 및 경계 (境界) 부근에 있어서의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사관계관청 (海事關係官廳) 및 해사관계자가 모여, 도마고마이항에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했으므로, 이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바람과 동시에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관제신호 (管制信号) 및 출입항의 기본 (基本)

(1) 관제신호

- 가. 출입항 하는 선박에 관해서는, 예정시각을 신호소 (信号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는, 변경 할 경우도 동일하다.
- 나. 총 톤수 10,000톤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및 배의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대형선이 출입항 할 때는, 선박교통의 제한 (제 4신호)에 따라 출입항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앞의 <나> 항에, 해당하는 선박이외의 대형선 (배의 길이 17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의 <소다 그루프 (group)> 및 <하루미 (晴海)> 부두에, 이착안 (離着岸)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뱃머리를 항구 입구쪽으로 향하고 착안 할 경우는, 제 4신호에 따라 입항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뱃머리를 항구 입구 반대쪽으로 향하고 착안 한 후, 출항 할 경우는, 제 4신호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동 신호발신 (同信号發信)에 따라 안벽에서 떠나, 선수회전 (船首回転) 해역에서, 소정 (所定)의 동작이 완료한 것을, 관제관이 직접 확인, 혹은, 레다 등으로 확인 한 시점 (時点)에서, 동 신호를 해제한다.

(2) 출입항 및 항내이동

- 가. 동일신호 (同一信号)로 출항하는 선박은, 항구 입구 가까운 곳에서, 출항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나. 선박교통의 제한 (제 4신호) 이, 해제 또는, 아침에 일제히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구 입구 가까이 있는 선박부터 입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단, 동일 장소에서 입항하는 경우는, 항구의 안쪽을 향하는 선박부터, 순서로 입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다. 닛케이 (日輕) 중앙 부두, 동 부두 동쪽에, 입항 착안하는 대형선 (배길이 170미터 이상 200미터미만)은, 원칙적으로, 선수를, 항구 입구 반대쪽으로 한다. 부득한 사정으로, 선수를 항구입구 쪽으로 향하고 착안 하는 경우는, 입항선의 제일 후방에서 입항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1구 (1区)를 향하는 선박이 없는 경우는, 입항선의 제일 후방에서, 착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It edited into homepages based on the data supervised by
"Tomakomai Marine Traffic Council".

- 라. 2구 (2区) 에서 1구로, 이동하는 선박은, 입항 신호에 따라, 이동하되, 항구 입구에 입항신이 없을때에 한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한다.
- 마. 1 구에서 2구로 이동하는 선박은, 출항 신호에 따라 이동하되,
2 구내에 출항신이 없을때에 한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한다.
- 바. 관제대상 밖의 선박은, 관제신호에 따르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함이 없도록, 항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출입항에 대한 주의 (注意)

도마고마이항은, 남동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곳으로, 출입항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2.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불량시 (視界不良時) 의 기본

- (1) 시계가, 500미터 이상 1,000미터 이하인 경우는, <출입항주의>로 한다. 이 경우, 관제대상 밖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관제신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2) 시계가,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인 경우는, <출입항중지>로 한다.
단,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이외의 선박은, 항로경계선 (航路警戒船) 을 배치하여, 출입항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관제대상 밖의 선박은, 관제신호에 따라 항로 경계선을 배치하여, 출입항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 시계가, 300미터 이하인 경우는, 모든 선박의 출입항을 중지하기로 한다. 단, 긴급한 경우로, 사전에 항장 (港長) 의 지시를 받은 선박은 제외 한다.

3. 수로안내인 (水路案内人 또는, 빠이롯트) 의 승선

- (1)
 - 가. 총 톤수 6,000톤 미만인 선박에는, 빠이롯트의 승선을 추장 (推獎) 할 것.
 - 나. 총 톤수 6,000톤 이상인 선박에는, 적극적으로 빠이롯트를 승선 시킬 것. 단, 훼리, 내항정항선 (자동차 전용선, ro/ro 방식, 콘테이너, 텡커 등) 및 도마고마이항에, 항상 출입항 하는 선박으로써, 당 항구의 항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선박에 관해서는, 그 선장의 판단에 일임 할 수도 있다.
- (2) 제 4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선박에는, 빠이롯트의 승선을 의무 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4. 예선 (曳船) 의 원조 (援助)

- (1) 적당한 트러스트 마력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선박
 - 가. 총 톤수 2,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선박은, 1척 이상의 예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나. 총 톤수 6,000톤 이상인 선박은, 적극적으로, 2척 이상의 예선을 사용 할 것.
- (2) 트러스트 마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흘수 제한선 (吃水制限船) 으로써, 선수회진을 해야 할 경우,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있어서는, 적당한 마력의 예선 1척 이상을, 적극적으로 사용 할 것.
- (3) 서부두 (西埠頭) 의 아북 (以北) 안벽에, 이착안 (離着岸) 하는 총 톤수 6,000톤 이상인 선박으로써, 선수회전을 해야 할 경우는 동부두 (東埠頭) 안벽의 공사기간 (工事期間) 중에 한하여, 시계불량시 (시계가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인 경우) 에는, 예선 1척을 적극적으로 사용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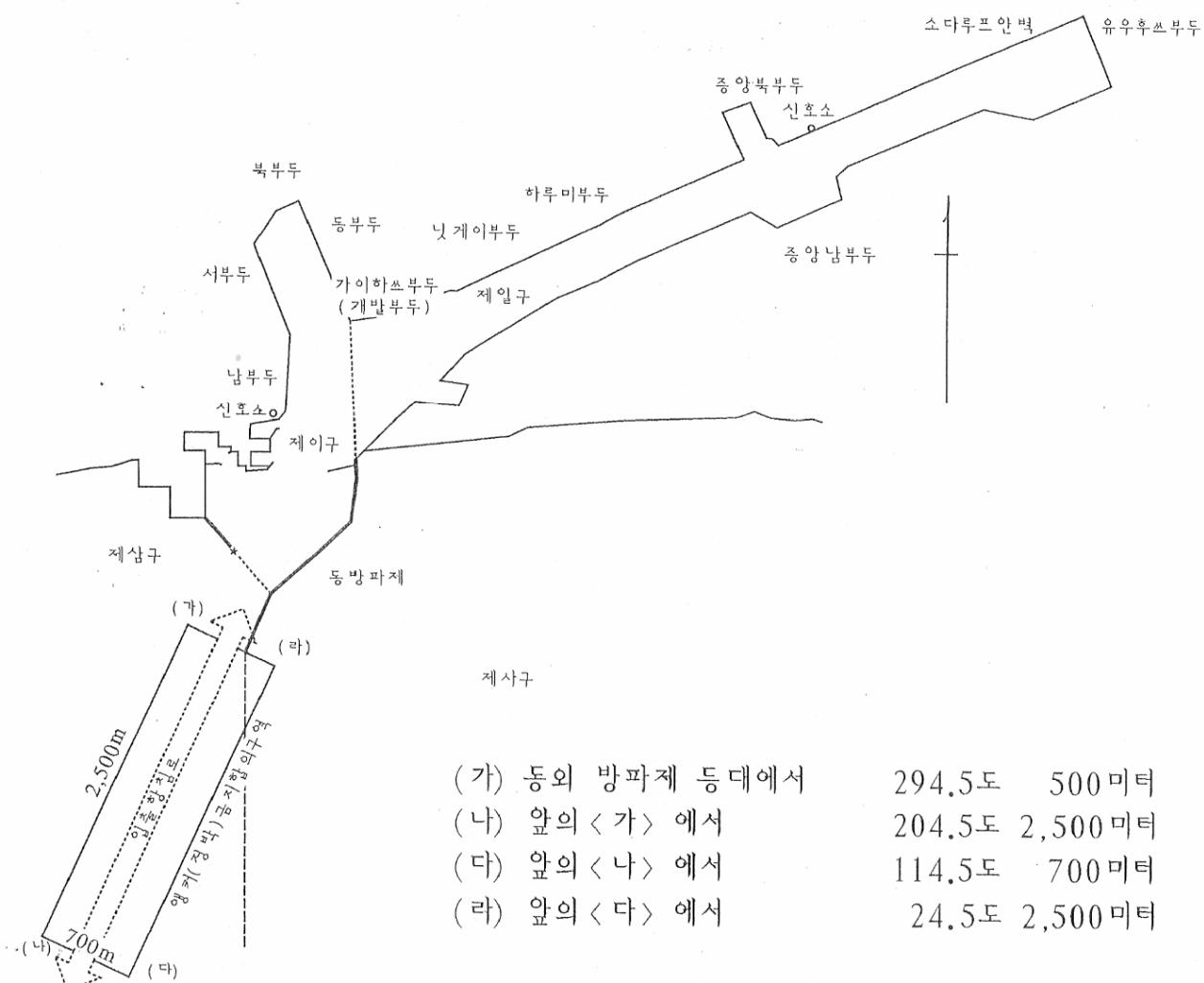
5. 앵커 (정박) 예관한 기본

(1) 앵커 (정박)

- 가. 3구, 4구에 앵커하는 선박은, 선명, 앵커지점, 닻 올릴 예정 시각 및 동외방파제 (東外防波堤) 등대 통과 예정시각 등을, 신호소에 통보 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남쪽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날씨가 거칠 때에, 방파제 밖에서, 앵커하는 것은, 닻이 떠 내려 갈 위험과 닻 줄이 절단 (切斷)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방파제 밖에서 앵커 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한다.

(2) 앵커 금지

항구 입구 부근은, 선박이 집중하는 해역이며, 이 해역에 있어서의 출입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지점 (地点) 을 순서로, 이은 선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 (항구 입구에서 앞 바다에 이르는 항로통) 은, 앵커 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6. 주의환기 (注意喚起) 신호 등

1 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개발부두 (훼리부두) 전면 부근에서는, 길게 기적을 한번 울리든가, 또는, 싸이렌 신호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으로써, 이 신호를 들었을 때는, 기적을 길게 한번 울리든가, 또는, 싸이렌으로 응답 할 것.

7. 무선기 (無線機) 에 의한 원락 설정

출입항 선박은, 무선기 (vhf, ch16) 를, 항상 청취하고, 선박 상호의 움직임 파악에 노력할 것.

苦小牧海上交通安全協議会
도마고마이해상교통안전협의회

事務局 苦小牧海上保安署内
사무국 도마고마이해상보안서내

苦小牧市港町 1 丁目 6 番15号
도마고마이시 미나도마치 1-6-15
전화 0144-36-4999 FAX0144-36-7407

1993년 12월